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 범위 규정 〉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45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 범위 규정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0.
3.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

당 시·도내의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됨.

이에, 시·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4호).

Ⅲ. 검토의견

1.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 범위 규정(안 제53조)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 ----- -----. ----- ----- --시·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 3. (생략) 4. 지방의회의원이 <u>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u>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u>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를 제외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 제53조제1항1)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각 호

1)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국회의원	○	○	×	×
지방의회의원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단,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한함

또한, 현행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법제5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좌동
제2호	보궐선거 등 입후보	좌동
제3호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입후보	좌동
제4호	지방의회의원이 <u>다른 지방자치 단체의</u>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입후보	지방의회의원이 <u>다른 광역지방 자치단체의</u>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입후보

그런데, 동일한 시·도 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데 비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로 빚어지는 의회 및 행정 공백을 줄이고 동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요건을 일관성있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도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사람은 현행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현직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거나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거나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어 입후보 사퇴시한이 다른 공무원 등에 비해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내용은 타 직역 공무원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음.

<지방선거 입후보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의 사퇴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
사퇴시한	선거일 전 90일까지 단, 그 직을 가지고 입 후보 시 사퇴시한 없음	선거일 전 30일까지 단, 그 직을 가지고 입 후보 시 사퇴시한 없음	선거일 전 90일까지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조기 사퇴로 인한 의회 및 행정 공백 해

소 필요성 및 선거일 전 90일이나 30일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다른 직역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전념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한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경우도 지역구지방의회의원과 유사하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고,²⁾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안과 동일하게 “시·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2)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43
